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파크 시공중 구조반응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중 현장 장비 설치 작업

2011년 06월 01일

계약 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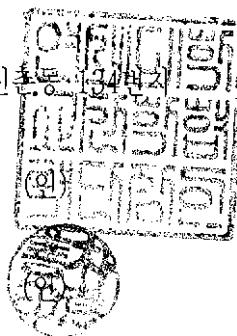
갑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94번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단장 홍 대식

연구책임자: 박효선



을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22 508호

상호: 주식회사 디에스텍

대표: 김종문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의뢰하고 “을”이 수행하는 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연구”의 범위 및 결과물)

① 을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1. 본 연구과제는 원발주사가 별도로 있다.

2. 본 연구과제는 갑과 원발주사가 체결한 연구계약 중 일부를 갑이 을에게 재위탁하는 과제이다.

② 이 계약에서 “연구”란 “갑”이 의뢰한 “연구”를 “을”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을”이 제공하는 “연구”의 범위와 그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 기술”에 대한 개발 및 그 결과 보고서는 갑에서 발주사에 제공하는 보고서 작성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기타 상세한 “납품 및 설치”의 범위는 갑이 발주사와 계약한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 3 조 (“연구”의 기간)

“을”的 “연구”기간은 2010년 7월 0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12 개월)로 한다. 위 기간은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세 일정 계획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 4 조 (결과물 제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을”은 제 3조의 “연구”기간 종료일 전에 ~~간아~~ 발주사와 계약한 장비 설치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적 재산권 및 결과물 귀속)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 각종의 지적재산권은 “갑”의 단독소유로 한다.

제 6 조 (“연구”의 대가 및 지급 방법)

1) “연구”의 대가는 본 계약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50,000,000 원(VAT별도)으로 한다.

2) “연구”의 대가는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7 조 (비밀 보장 및 명칭의 사용)

1) “갑”과 “을”은 이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및 개발과정에서 알게 되는 상대방의 모든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일방당사자가 이를 위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 본 조항은 을의 논문, 학회, 세미나 등 학술적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갑”은 광고, 선전, 판매 촉진, 기타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용하거나 과제 성

과를 신문, 잡지, 인터넷, 기타 언론매체, 자사 홈페이지에 보도/.제공/제재하지 아니한다.

5) “갑”은 광고, 선전, 판매 촉진, 기타 목적으로 “을”的 상호, 상표, 서비스표, 기타 “을”을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제3자 양도불가)

갑은 본 연구계약을 통해 을이 갑에게 제공한 모든 유형,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9 조 (신의 성설 및 상호 협조)

- 1)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갑”은 “을”的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1) “갑”的 해지

“을”이 본 연구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的 해지

“갑”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을”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해지협의

본 조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연구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시점까지 연구를 위하여 을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사용된 연구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족한 금액은 갑이 을에게 추가 지급하며 잔액은 을이 갑에게 반환한다.

4)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효력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2 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당사자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손해배상)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당사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2)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기타 사항)

- 1)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합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청, 담보제공 또는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2)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 3) 을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원발주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